**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에 대한 법률**

**옮긴 이: 이불쟁이(DSO)**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잉글랜드**

**입법**

**2003년 성범죄법**

여기에는 성적인 그루밍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때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을 만났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가해자들이 실제로 아동을 만나려고 의도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웹캠을 통해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있다.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이 법에 따르면, 괴로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범죄가 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루밍하는 이들이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경우 결국 고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은 힘들다. 가해자들은 아동의 온라인 프로필을 참고하여 그들의 흥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관계를 쌓기 위해 목표한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항(section)**

이에 따르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인, 음란한,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자행하는 이들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정책과 지침**

**#WePROTECT 아동 온라인 서밋**

2014년 12월에 개최된 #WePROTECT 아동 온라인 서밋에서 정부는 온라인 아동 성폭력을 멈추기 위한 일련의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불법으로 만드는 새로운 입법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 성착취와 국지적인 그루밍에 대한 대응**

정부는 2013년 내무위원회에서 발행된 두 번째 리포트에 답변을 내놓았다.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접근을 마련한 것인데, 온라인 아동 성착취에 대한 레퍼런스 및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포함한다.

**아동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지침**

해당 지침은 2013년 10월, 공공기소국이 발행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검사들이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가 나와 있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2012-2015년 3년 전략**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2012)

해당 전략은 2012년 CEOP에서 발행한 것이다. 아동 성착취를 멈추고 방지하기 위해 CEOP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문서이다.

**북아일랜드**

**입법**

**2003년 성범죄법**

여기에는 성적인 그루밍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때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을 만났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가해자들이 실제로 아동을 만나려고 의도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웹캠을 통해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있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항**

127항에 따르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인, 음란한,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자행하는 이들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정책과 지침**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지침**

(북아일랜드 보호 위원회Safeguarding Board for Northern Ireland, 2014)

해당 지침은 2014년 10월 북아일랜드 보호 위원회가 발행한 것이다.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하여 아동 성착취 전문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아일랜드 교육부 온라인 지침**

북아일랜드 교육부 웹페이지의 <인터넷과 와이파이> 항목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허용 가능한 것과 안전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아동 보호: 그루밍과 아동 사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012-2015년 3년 전략**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2012)

해당 전략은 2012년 CEOP에서 발행한 것이다. 아동 성착취를 멈추고 방지하기 위해 CEOP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문서이다.

**스코틀랜드**

**입법**

**2009년 스코틀랜드 성범죄법**

해당 법에 따라 성인이 고의적으로 아동과 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 경우 범죄가 된다. 이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성공적으로 기소가 가능하지만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불가능하다.

**정책과 지침**

**아동 성착취에 대한 국가적 액션플랜**

스코틀랜드 정부는 아동 성착취를 막고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해당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변호사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 탄원 위원회**

(2014년의 첫 번째 보고서: 스코틀랜드의 아동 성착취를 막기 위한 보고서)

이는 2014년 1월 14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발행된 것이다. 여기에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아동 성착취를 멈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추천되어 있다.

**2009년 스코틀랜드 성범죄법에 대한 지침**

2009년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행한 것이며 아동과 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범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2012-2015년 3년 전략**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2012)

해당 전략은 2012년 CEOP에서 발행한 것이다. 아동 성착취를 멈추고 방지하기 위해 CEOP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문서이다.

**웨일즈**

**입법**

**2003년 성범죄법**

여기에는 성적인 그루밍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 때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성인이 의도적으로 아동을 만났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가해자들이 실제로 아동을 만나려고 의도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웹캠을 통해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있다.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이 법에 따르면, 괴로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범죄가 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루밍하는 이들이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경우 결국 고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은 힘들다. 가해자들은 아동의 온라인 프로필을 참고하여 그들의 흥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관계를 쌓기 위해 목표한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항**

이에 따르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인, 음란한,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자행하는 이들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정책과 지침**

**#WePROTECT 아동 온라인 서밋**

2014년 12월에 개최된 #WePROTECT 아동 온라인 서밋에서 정부는 온라인 아동 성폭력을 멈추기 위한 일련의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불법으로 만드는 새로운 입법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지침**

해당 지침은 2013년 10월, 공공기소국이 발행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검사들이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지가 나와 있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2012-2015년 3년 전략**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 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 CEOP, 2012)

해당 전략은 2012년 CEOP에서 발행한 것이다. 아동 성착취를 멈추고 방지하기 위해 CEOP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한 문서이다.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률**

**잉글랜드**

**입법**

**2013년 명예훼손법**

이에 따라 웹사이트의 주인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료를 삭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2011년 교육법**

해당 법은 교사들에게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부적절한 이미지 혹은 자료를 찾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이버불링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항**

127항에 따르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인, 음란한,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자행하는 이들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1997년 성희롱 보호법**

이 법은 희롱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불링을 다룬다.

**1994년 형사정책 및 공공 질서법 154항**

154항은 서면으로 작성된 메시지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희롱을 다룬다.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이 법에 따르면, 괴로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범죄가 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루밍하는 이들이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경우 결국 고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은 힘들다. 가해자들은 아동의 온라인 프로필을 참고하여 그들의 흥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관계를 쌓기 위해 목표한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정책과 지침**

**사이버 불링에 대해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권고**

2014년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가 발행한 것으로, 사이버 불링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하는 지, 만약 발생했다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권고와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버 불링과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아동 혹은 청소년**에 대한

교사와 타 전문가들을 위한 지침

2013년 반-불링 연대가 발표한 지침으로 특수 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불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낸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사건들 가운데 기소된 것에 대한 지침**

2016년 공공기소국이 발행한 것으로 해당 지침에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저지른 범죄를 포함하여 이러한 사건을 검사가 어떻게 접근하여 다룰 지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항목 2는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다.

**북아일랜드**

**입법**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항**

127항에 따르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인, 음란한,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자행하는 이들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1997년 북아일랜드 성희롱 보호법**

이 법은 희롱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불링을 다룬다.

**1988년 북아일랜드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안감 혹은 괴로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전자기기를 통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정책과 지침**

**북아일랜드 교육부 온라인 지침**

북아일랜드 교육부 웹페이지의 <인터넷과 와이파이> 항목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허용 가능한 것과 안전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작성했으며 여기에는 <아동 보호: 그루밍과 아동 사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스코틀랜드**

**입법**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항**

127항에 따르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인, 음란한,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자행하는 이들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1997년 성희롱 보호법**

이 법은 희롱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불링을 다룬다.

**치안 방해**

이 관습법은 희롱과 불링을 포함하여 공포, 고통을 초래하는 모든 행동을 기소할 때 사용될 수 있다.

**1995년 스코틀랜드 형사법령 (강화)**

50A항은 인종주의가 원인이 된 사이버 불링을 다룬다.

**정책과 지침**

**Respect*me***

이는 스코틀랜드의 반-불링 서비스이며 스코틀랜드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불링을 막는 방법과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지침과 자료를 제공한다.

**웨일즈**

**입법**

**2013년 명예훼손법**

이에 따라 웹사이트의 주인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료를 삭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항**

127항에 따르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노골적인, 음란한, 위협적인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electronic message)를 보내는 것은 범죄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루밍을 자행하는 이들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동과 신뢰를 쌓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1997년 성희롱 보호법**

이 법은 희롱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불링을 다룬다.

**1994년 형사정책 및 공공 질서법 154항**

154항은 서면으로 작성된 메시지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희롱을 다룬다.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이 법에 따르면, 괴로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범죄가 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그루밍하는 이들이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경우 결국 고통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은 힘들다. 가해자들은 아동의 온라인 프로필을 참고하여 그들의 흥미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관계를 쌓기 위해 목표한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정책과 지침**

**타인 존중(Respecting others) – 사이버 불링 항목**

웨일즈 정부에서 2011년에 발행한 것.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는 방법 및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교에 알려주는 지침.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보낸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사건들 가운데 기소된 것에 대한 지침**

2016년 공공기소국이 발행한 것으로 해당 지침에는 소셜 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저지른 범죄를 포함하여 이러한 사건을 검사가 어떻게 접근하여 다룰 지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 항목 2는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다.

**섹스팅**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영국 내의 법**

**잉글랜드**

**1978년 아동 보호법**

이 법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성적인 사진 혹은 가짜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보여주고, 유포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1988년 형사정책법 11편(part)**

이에 따라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2003년 성범죄법**

해당 법에는 성범죄와 그 정의가 나열되어 있다. 만약 성행위에 대한 이미지가 공유되었다면 경찰은 반드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2015년 형사정책 및 법원법 33항**

이에 따라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개인의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북아일랜드**

**1978년 북아일랜드 아동보호령 3조(article)**

이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성적인 사진 혹은 가짜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보여주고, 유포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2003년 성범죄법**

해당 법에는 성범죄와 그 정의가 나열되어 있다. 만약 성행위에 대한 이미지가 공유되었다면 경찰은 반드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2015년 형사정책 및 법원법 33항**

이에 따라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개인의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스코틀랜드**

**1988년 형사정책법 11편(part)**

이에 따라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2015년 형사정책 및 법원법 33항**

이에 따라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개인의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1982년 스코틀랜드 시민 정부 52항, 52A항**

52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성적인 사진 혹은 가짜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보여주고, 유포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52A항은 16세 미만 아동의 성적인 사진 혹은 가짜 사진을 소유한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웨일즈**

**1978년 아동 보호법**

이 법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성적인 사진 혹은 가짜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보여주고, 유포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이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1988년 형사정책법 11편(part)**

이에 따라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2003년 성범죄법**

해당 법에는 성범죄와 그 정의가 나열되어 있다. 만약 성행위에 대한 이미지가 공유되었다면 경찰은 반드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한다.

**2015년 형사정책 및 법원법 33항**

이에 따라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개인의 성적 사진 혹은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https://www.nspcc.org.uk/preventing-abuse/child-abuse-and-neglect/online-abuse/legislation-policy-practice/